

목차

1. 노인 인권
 - 인권의 정의
 - 노인 인권의 정의
 -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의 유형(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 노인학대의 대응방법

1. 노인인권

1) 인권이란?

- 인간이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2)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노인인권

3)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노인인권

1)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주먹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노인학대의 유형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 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유형

③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원하 지 않는 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유형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유형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 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 돌봄 거부로 생명이 위협받는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유형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1) 노인학대의 예방

①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1) 노인학대의 예방

① 종사자의 역할

- 동료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들 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금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2) 노인학대의 대응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
-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신고(1577-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의사에 반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음.
- 시설은 신고인의 신분보장, 학대사례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

조사 와 사정



- 노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 원장 또는 사무국장은 노인의안전확인, 학대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운영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2) 노인학대의 대응

학대사태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과 협력하여 개입 진행
-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제공
- 시설장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계획수립 및 실시
- 학대행위자에게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우선하고 징계가 요구 될 경우 자문과 규정에 의거, 결정

평가/ 사후조치



- 노인의 안전한 보호 조치 평가
- 노인의 신체, 심리적 기능 회복 정도 평가
- 학대재발 가능성 평가
-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 보고
-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재발 여부 확인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2) 노인학대의 대응

① 최초 발견

- 어르신을 해당상황에서 분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증거확보(녹음, 상처부위 사진, CCTV 등)
-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 진행.

② 상부에 보고(과장, 국장, 원장)

③ 시설은 피해현장 및 어르신, 가해자, 목격자 등 확인

④ 보호자 상담

⑤ 절차에 따라(인사 위원회 등) 징계. (견책, 감봉, 해고 등)

⑥ 상황이 위중하거나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경우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112 등에 신고.
